



# 【검토보고서】

2015. 10. 20(화)  
제 262 회 임시회

##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최영인】

#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과

- 제안자 : 양주시장(안전총괄과)
- 제출일 : 2015년 10월 7일
- 검토일 : 2015년 10월 8일

### 2. 제안이유

- 개발분야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 대신 상위법령에 따라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함.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위원 확보(안 제2조)
- 검토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 제8조)
- 대상사업의 공정한 검토를 위해 위원의 연임 차수를 제한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을 구체화 (안 제6조, 제12조)

## 4. 검토의견

### 가. 법령검토

-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저감대책 수립방안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위임조례이며
- 조례(안)에서는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나. 정책검토

- 법 제4조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경우 재해영향의 사전검토협의를 받게 되어있으며
- 검토협의 대상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하천 및 산지의 개발 등으로 계획이나 개발전에 사전검토협의를 거쳐야 함.
- 올해 검토협의 건수는 총 19건이며 이중 산지개발 13건, 공장설립 3건, 군사시설 개선사업 2건, 서울우유 단지 조성 1건으로 특정분야의 협의요청이 편중되어 있음.
-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 및 사업에 재해유발 방지 방안을 협의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명확한 검토를 위해선 무엇보다 검토위원의 전문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 다. 내용검토

- 안 제2조에서는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분야별 전문가로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5조에서는 현행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던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게 하였고 이는 검토요청이 특정분야의 분과위원회로 집중되어 사안별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며 국민안전처예규 제2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운영규정」에도 사안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그 외 사항은 자구수정, 단순 띄어쓰기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라. 형식검토

- 본 조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 체계를 갖추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문제점은 없음.

#### 마. 절차검토

-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음.